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훈 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사전검토 누락 등 업무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훈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원 지방○○○○보 ○○○

② 울산광역시 ○○○○○○○과 지방○○○○ ○○○  
(전 울산광역시 ○○과)

내 용

지방○○○○보 ○○○은 2017. 1.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원에서 근무하면서 ‘○○○○○○○ 본관내진보강공사’의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6. 1. 13.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광역시 ○○과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건의 공사를 추진하고자 E-ALS공법(건설신기술 제000호 : 하수관로 보수공법) 등 14건의 특허(신기술)을 반영하여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년 12월까지 ‘○○○○○○○ 본관 내진보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은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사전검토 없이 특허공법 설계반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제4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공사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실시설계 용역사업자는 설계 반영 전에 해당 특허 등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에 대한 가격 및 성능 등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과 등 3개 부서)에서는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의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하수관로 보수공사[E-ALS공법 : 보수재 하부의 응축수를 가온시키는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공법 (건설신기술 636호)]’ 등 11건의 특허(신기술)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특허제품 등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한 자료를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 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검토보고 없이 특정업체의 특허(신기술)를 설계에 부적정하게 반영하였다.

## 2. 기술사용 협약 미체결 및 특허공법 입찰공고 미고시 등 업무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

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제4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공사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sup>1)</sup>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하도급 계약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sup>2)</sup>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원 등)에서는 ‘○○○○○○○ 본관 청사

1)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예시)

2) 국토교통부 훈령 제462호(2014. 12. 10.) [별표 1] 기술사용 요율 : 신기술공사비 1억원 이하 8.5%, 2억원 이하 8.3%

내진보강공사' 등 3건의 실시설계 시 특정업체의 특허 제00-0000000호(내진보강용 철골 구조물 접합구조 및 접합공법) 등 3건을 반영하면서,

실시설계 준공 전에 특허 및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119안전센터 구조 및 내진보강공사' 등 3건은 준공 후 특허권자 등과 사용협약을 맺었으며, '○○○○○○○○○ 본관 청사 내진보강공사'는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와 기술보유자 간 사용협약을 하였다.

더구나 '○○○○○○○○○ 본관 청사 내진보강공사'의 경우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제한경쟁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결국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98,390천원 중 76%에 해당하는 74,773천원에 대하여 67,295천원으로 특허보유자와 하도급율(하도급금액/도급금액)이 9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기술사용료 제척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 제한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과 등에서는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건에 반영된 특허공법(신기술)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 하지 않아 기술사용료 또한 반영하지 않은 채 신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건설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에 대해 특허보유업체에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되어 특허보유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되었고, 반면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 지방○○○○보 ○○○, 지방○○○○ ○○○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장, ○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공법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입찰공고시 제한내용을 명시하는 등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이익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